

---

# 제2차 WCPFC 열대 다랑어 워크숍 참석 결과

---

2021. 9.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업협력센터

# I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2차 WCPFC 열대 다랑어 워크숍\*

\* 영문명 : Development of New WCPFC Tropical Tuna Measure Workshop 2

□ **회의 목적**

○ WCPFC 열대 다랑어 보존관리조치(CMM 2020-01) 개정 논의

□ **일시/장소** : '21.9.6.(월)~9.10.(금)\* / 화상회의

\* '21.9.8.(수) 휴회

□ **참석자**(약 200여명) : 한국, 미국, FFA, 일본 등 WCPFC 회원국 및 NGOs, 업계 등 대표

○ 해외수산협력센터 참석자 : 원태훈 전문관

○ 정부 대표

이름	기관 및 직위	비고
오성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수석대표
김정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회의 의장
나일강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교체수석
이성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연구관	
김장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초빙연구원	

□ **주요 의제**

○ SSP의 회원국 분석 요청 결과 발표

○ 신규 보존관리조치 신규 관리목표 논의

○ 관리 옵션

- 선망/연승 수역기반 관리 여부

- 눈다랑어 공해 어획한도

## II 주요 논의

### 1 관리 목표(Management Objectives)

#### □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관리 목표

- (PNA/FFA) 현 조치의 눈다랑어 관리 목표를 기준으로 논의 필요
  - 자원평가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SC 조언 기반 사전 예방조치이며, 어획전략(HS\*) 채택을 위한 가교역할 지속 주장
- \* Harvest Strategy : 쿼터 설정 등, 수산 관리를 위해 사전에 합의된 관리 프레임워크
- (우리나라) 현 눈다랑어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의 어획 한도 증가가 가능함을 주장
- (미국) WCPFC 협약수역 내 지역별 각기 다른 자원 고갈 수준 및 정도를 고려하는 눈다랑어 관리 목표 제안\*
  - \* [...] and excessive spatial unevenness in spawning biomass depletion is to be avoided to support thriving fisheries throughout the Convention Area
- PNA 등 일부 회원국은 미국의 제안 문구가 모호하며, 미국이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가 한국,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의 CPUE에만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대

#### □ 가다랑어 관리 목표

- (일본) 기준 연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일 연도보다는 3년 다년도 기준을 선호
- 과거 자원평가에 기반한 50%SB<sub>F=0</sub> 임시 TRP가 최근 자원평가에 기반한 42% 수준과 동일한지 여부를 SPC에게 확인 요청
- (FFA) '12년 수준의 자원량 및 '12년 선망 노력량 유지와 함께

## HS 채택을 위한 가교역할 지속 주장

### □ 어업별 균형

- (PNA/FFA) 현행 조치는 어업별 균형이 잘 이뤄져 있으며, SIDS에 대한 특별 조항 등 국가별 보존 부담 역시 균형을 이룸
  - 하지만 공해 연승어업에 대한 규제 부족으로 불균형 존재하며,
  - 일부 국가들의 희망하는 연승 어획 한도 증가는 FAD 금어기 및 공해 선망 노력과 패키지 협상임을 강조
- (우리나라) 어업별 균형 외, 선망어업의 공해 조업일수와 EEZ 조업 일수에 불균형 존재 지적

### □ 사회경제적 요소

- (PNA/FFA) 현행 조치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 SIDS를 위한 특별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패키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을 주장
- (중국) 현행 조치에는 footnote1\* 등으로 이미 SIDS를 위한 사회경제적 요소 잘 반영
  - \* CMM 2020-01 para 17, footnote1 : PNA 회원국은 나우루 협정에 따라 FAD 관리가 가능하며, FAD 금어기가 적용되지 않는 자국 선박 목록을 사무국장에게 통보
  - 과거 남방 날개다랑어 TRP의 사회경제적 요소가 포함되었으나 3년간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험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요소 포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이외, 사회경제적 요소 고려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 규명, 수혜 대상 식별, 사회경제적 요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어업에 대한 영향 고려 필요 등 회원국 의견 개진

## 2 관리 옵션(Management Options)

### □ 선망어업 - 공해 노력 통제

- 공해 선망 hard effort limits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 도출
- EU는 최근 몇 년간 공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들의 공해 노력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 특별 조항을 통해 SIDS의 선단 능력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니 공해에 추가된 노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든 국가의 공해 규제가 적용 필요성 강조
- 우리나라는 '10년 공해 어장 폐쇄 이후 발생한 공해-EEZ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해 노력량 감축을 해온 국가들의 조업 기회 회복 주장

### □ 선망어업 - FAD 관리

- (FAD 정의) 우리나라와 일본 등 회원국은 FAD 정의 개정 주장\*

\* FAD 정의 우리나라 및 일본 입장

우리나라	FAD 금어기 중 추적부이 미부착 물체 FAD 취급 제외 및 FAD 거리 0.5마일로 축소
일본	소형 쓰레기(small garbage) FAD 정의에서 삭제

- 미국은 0.5마일 제안은 찬성하나 추적부이 미부착 물체 제안에는 반대 의견 표명
- 인니는 FAD 금어기가 drifting FAD에만 적용되며 anchored FAD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 EU의 조치 제17항 footnote1이 비 SIDS 국가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중국은 용선계약을 통한 SIDS 기를 계양한 외국선 역시 SIDS 선단임을 주장하며 반박
- FFA는 FAD 논의가 연승 한도 증가와 패키지임을 재강조

- (비영킴 및 생분해성 FAD) 비영킴 FAD 의무 조항과 자발적 생분해성 FAD 조항이 지속될 필요에 회원국의 공감대 형성
    - FFA는 현행 조치 제19항의 비영킴 조치 강화를 위하여 그물망(mesh)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 생분해성 FAD 제작을 위해 생분해성 FAD의 명확한 정의를 규명할 필요가 제기됨
  
  - (Instrumented buoys) 현행 조치에 규정된 instrumented buoys 350개 개수 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
    - 본 사안은 FAD 작업반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
    - EU는 FAD 이용 관련 보고 요구사항 규정 문구\*를 제안하였고, 이는 추후 검토 및 논의 결정
- \* In order to support the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the limitation established in Paragraph 23, while protecting any confidential data, CCMS shall, starting on 01/01/2022, report, or require their vessels to report, daily information on all active FADs to the Secretariat. Such information shall contain, date, instrumented buoy ID, assigned vessel and daily position, which shall be compiled at monthly intervals, to be submitted with a time delay of no longer than 30/45/... days

## □ 연승어업 - 눈다랑어 어획 한도

- (눈다랑어 어획 한도) PNA는 연승어업 또한 선망어업과 동일한 수역 기반 관리 체제 도입을 주장
  - 이에 대해 일본은 대부분의 어획이 PNA EEZs에서 발생하는 선망어업과 달리 연승어업은 공해 조업 비중이 크므로 기국 기반 관리 체제가 더 합리적임을 설명
  - 미국과 대만은 PNA 연승 수역 기반 체제의 세부 사항을 알기 전까지는 합의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고,

- 우리나라는 PNA가 주장하는 눈다랑어 현행 목표 유지 시 어획 한도 증가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지적
- (어획 한도 보고 요구사항) 중국은 본 보고 요구사항은 눈다랑어 회복 시기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자원이 회복되었으니 월간보고가 의무로서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이에 더해, 본 보고 의무가 선망어업에는 요구되지 않아 불균형이 존재하며, 본 의무사항 이행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지적
- (용선 규정) EU, 미국 등 회원국은 현행 조치 제8항\*의 의미가 불분명하니 명확히 수정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EU는 본 조항을 이용하여 비 SIDS 국가 선박이 SIDS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됨을 재강조
- 제9항 관련 중국은 아메리칸 사모아와 미국 사의 협정을 용선 협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9항\*\*을 용선 규정에서 삭제하고 미국을 위한 특별 조항 신설을 제안
- \* CMM 2020-01 제8항 : 용선 계약에 따른 어획 및 노력량은 용선 국가에게 귀속
- \*\* CMM 2020-01 제9항 : 미국과 미국의 속령 사이 용선 협정에 따른 어획 및 노력량은 속령에게 귀속. 본 용선 협정은 위원회에게 통지
- (No data no fish) EU는 연승어업에도 데이터 미제공 시 어획물의 선상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제안
- 본 사안은 추후 추가 논의 결정

## □ MCS 조치 및 보고 요구사항

- (옵서버 재배치) 옵서버 재배치의 중요성에 대한 회원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본 요소를 열대성 다랑어 조치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데 합의
- (연승 및 기타 어업 옵서버 커버리지) FFA는 EM 등을 이용하여

연승 옵서버 승선율을 증가해야 함을 주장

- 이에 일본, 우리나라, 대만 등은 연승 옵서버 승선율 증가는 EM 개발 상황에 맞춰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
- (전재 관리) FFA는 해상전재가 IUU 어업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모든 전재는 항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이에 일본은 옵서버의 감시 등을 통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해상 전재에서 범죄 활동이 보고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 중국은 옵서버에 의해 100% 감시되고 있는 해상 전재에 비해 항구 검색은 PSMA 등을 따라도 검색률이 5%밖에 되지 않아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FFA에 반박
- (조사를 위한 옵서버 보고서) 미국은 기국 조사를 위해 필요한 옵서버 보고서의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논의 문서 제출
  - 한국, 일본 등 회원국은 옵서버 보고서 부재로 기국 조사가 정지된 잠정 위반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며 옵서버 보고서 입수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본 사안은 TCC17에서 논의 예정